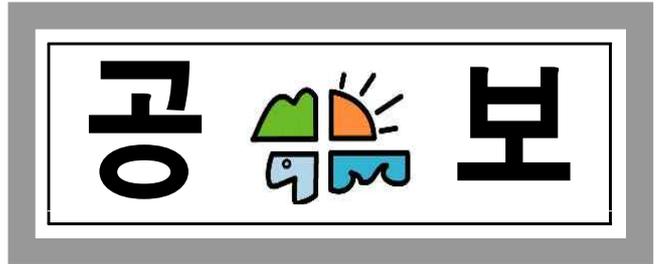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175호 2018년 11월 19일(월)

공 고

-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명시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명시 필요하여 우리시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 안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존속기한 안 신설
-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안 신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안 신설(안 제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예산경영팀)
- 연락처 : 033-639-2118(FAX 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예산경영담당(639-21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2조(「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3조(「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5조</u> (생략)	<u>제6조</u> (현행 제5조와 같음)
<u>제6조</u> (생략)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 제2조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7조 ~ 제10조</u> (생략)	<u>제8조 ~ 제11조</u>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u>제11조</u> (생략)	<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

- 제3조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8조</u> (생략)	<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 제4조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제5조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